

전신주 까치집 제거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

재 해 개 요

2020년 02월 26일 16시 30분경 재해자(엔진부품보온작업자, 남, 54세)가 (주)◇◇◇◇(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) 사업장 내 전신주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 후 내려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이 활선에 부딪혀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임

재해발생 상황도



보호구 미착용

재해 현장

재해 당시 재해자 위치

재해발생 원인

-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
 - 50V 이상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무자격자 작업 실시
 -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전기 작업자가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미사용
 - 절연용 보호구 착용 미실시
 - ※ 관련법규 :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규칙 제318조(전기작업자의 제한), 규칙 제321조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- 충전전로 인근작업에 대한 안전거리 미준수
 - 13.4 kV로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인근에서 무자격 근로자가 안전거리(300 cm)이내에서 작업함
 - ※ 관련법규 : 규칙 제321조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-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감독 미흡
 - 사업주의 감전의 위험 대상 근로자에 대해 절연용 보호구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
 - ※ 관련법규 : 규칙 제323조(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)

재해예방 대책

-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
 - 50V 이상 전기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실시
 - 감전위험 대상 전로 등의 정비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
 -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필수 사용 조치
 -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 근접작업 시 근로자의 감전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전 해당 전로의 차단, 방호, 차폐 조치
- 충전전로 인근작업에 대한 안전거리 준수
 - 충전전로 인근 작업의 경우 적합한 접근한계거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
-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
 - 사업주는 충전부 부근 작업에 대해 감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(특별고압 충전전로 근접작업에 적합한 절연안전모, 절연장갑, 절연화, 방염복 등)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